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793 호 2012. 12. 31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2호[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3호[도로명주소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4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5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6호[2012년도 제3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]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7호[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] 11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2-192호

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,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중울산농업협동조합						
주 소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52-9번지						
점용위치	화봉동 1178-3번지	하 천 명	명 촌 천				
점용목적	공작물의 신축을 위한 점용	점용면적 (㎡)	구 분	일시	5년		
			지방하천	-	11		
점용기간	2013. 01. 01. ~ 2017. 12. 31.						
하천공사의 명칭	농산물 하치장 부지조성공사	하천공사 목적	차량통행을 위한 공작물 신축				
하천공사 시행자 성명(주소)	점용자와 동일	공사기간	2013. 01. 01. ~ 2013. 07. 31.				
공사위치	화봉동 1178-3번지						
토지 소재지	소재지		지 번	지목	대장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자
	구,군	동,리					
	북구	화봉동	1178-3	제	442	11	국(농림부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- 193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모듈화산업로 201-13외 1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2. 3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제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안암동 1382	울산광역시 북구 모동화산입로 201-13(안암동)	2012-2-31	모동화산 입도지 내에 조성된 도로로 도로명을 부여	2010-04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전곡동 812	울산광역시 북구 산문길 118(전곡동)	2012-2-31	반문성으로 가는 길이라하여 도로명 부여	2004-08-09	
3	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1468-1	울산광역시 북구 회산로 12-11(회봉동)	2012-2-31	자연부르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	2010-04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2-4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4길 22-1(호계동)	2012-2-31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9-08-20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민동 981외 3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고동화산입로 108(호민동)	2012-2-31	고동화산 입도지 내에 조성된 도로로 도로명을 부여	2010-04-27	
6	울산광역시 북구 전장광촌 74B 2-11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4-9(전장동)	2012-2-31	옛지명이며 현지 드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68-2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366-1(구유동)	2012-2-31	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	2009-08-20	
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66-5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46(호계동)	2012-2-31	동대산인근에 위치한 구획 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 부여	2001-03-22	
9	울산광역시 북구 호민동 585-7	울산광역시 북구 임포로 307(호민동)	2012-2-31	임포항기항지를 연결하는 노포이므로 도로명 부여	2001-03-22	
10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2-10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0길 10(호계동)	2012-2-31	호계시수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	2009-08-20	
1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7-4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13(호계동)	2012-2-31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9-08-20	
12	울산광역시 북구 연인동 316-13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55-1(연인동)	2012-2-31	옛지명이며 현지 드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9-08-20	
13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52-5	울산광역시 북구 우가1길 45-18(당사동)	2012-2-31	기존 자연마을인 우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4-08-09	

순번	중점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4	울산광역시 북구 사계동 536	울산광역시 북구 사계동 5-2(사계동)	2012-12-31	기존 지역마을이 사계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4-08-09	
1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5-12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7길 5(호계동)	2012-12-31	기존 호당길이 추상영사오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면번호방식이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9-08-20	
16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5-3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43(호계동)	2012-12-31	기존 호당길이 추상영사오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면번호방식이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9-08-20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-194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7-1외 6건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
.(별지참조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2. 3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제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58-2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7-1(양정동)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8(양정동)	2012-12-31	출입구 변경	
2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37-4	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2길 26-14(양정동)	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2길 26-15(양정동)	2012-12-31	착오부여	
3	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294-14	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본로 120(진곡동)	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본로 117(진곡동)	2012-12-31	착오부여	
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5-11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7길 5(호계동)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7길 5-1(호계동)	2012-12-31	착오부여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5-14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43(호계동)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41(호계동)	2012-12-31	착오부여	
6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84-9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6-6(호계동)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-7(호계동)	2012-12-31	출입구 변경	
7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84-10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6-4(호계동)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-5(호계동)	2012-12-31	출입구 변경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- 195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울산 복구 대안3길 39	2012. 12. 31.	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2. 3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 2012 - 196호

고 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2년도 제3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
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2. 31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- 의회 의결일자 : 2012. 12. 24.
 2012년도 제3회 일반·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신 액		기정액		비교증감	
	액	구성비	액	구성비	액	증감률
총 계	205,560,068	100.00%	190,910,951	100.00%	14,649,117	7.67%
일반회계	200,294,727	97.44%	185,648,616	97.24%	14,646,111	7.88%
특별회계	5,265,341	2.56%	5,262,335	2.76%	3,006	0.06%
기타특별회계	5,265,341	2.56%	5,262,335	2.76%	3,006	0.06%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69,555	0.08%	166,555	0.09%	3,000	1.80%
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	3,803,598	1.85%	3,803,592	1.99%	6	0.00%
기반시설특별회계	347,390	0.17%	347,390	0.18%	0	0.00%
주차장특별회계	935,219	0.45%	935,219	0.49%	0	0.00%
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	9,579	0.00%	9,579	0.01%	0	0.00%

□ 일반·특별회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장·관	예 산 액	기 정 액		비 교 증 감		
		구성비	구성비	증감률	증감률	
총 계	205,560,068	100.00 %	190,910,951	100.00 %	14,649,117	7.67%
100 지방세수입	45,037,000	21.91 %	42,421,000	22.22 %	2,616,000	6.17%
110 지방세	45,037,000	21.91 %	42,421,000	22.22 %	2,616,000	6.17%
200 세외수입	34,650,972	16.86 %	32,415,454	16.98 %	2,235,518	6.90%
210 경상석세외수입	11,737,518	5.71 %	10,713,215	5.61 %	1,024,303	9.56%
220 임시적세외수입	22,913,454	11.15 %	21,702,239	11.37 %	1,211,215	5.58%
300 지방교부세	4,973,089	2.42 %	4,754,089	2.49 %	219,000	4.61%
310 지방교부세	4,973,089	2.42 %	4,754,089	2.49 %	219,000	4.61%
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	34,797,422	16.93 %	30,175,949	15.81 %	4,621,573	15.32%
410 조정교부금	33,860,371	16.47 %	29,238,798	15.32 %	4,621,573	15.81%
420 재정보전금	937,051	0.46 %	937,051	0.49 %	0	0.00%
500 보조금	86,101,585	41.89 %	81,144,559	42.50 %	4,957,026	6.11%
510 국고보조금등	48,567,523	23.63 %	45,626,963	23.90 %	2,940,560	6.44%
520 시·도비보조금등	37,534,062	18.26 %	35,517,596	18.60 %	2,016,466	5.68%

□ 일반·특별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	비 교 증 감		
		구성비	구성비	증감률	증감률	
총 계	205,560,068	100.00 %	190,910,951	100.00 %	14,649,117	7.67 %
010 일반공공행정	13,601,912	6.62 %	13,907,177	7.28 %	△305,265	△2.20 %
020 공공질서및안전	460,063	0.22 %	492,583	0.26 %	△32,520	△6.60 %
050 교육	2,737,659	1.33 %	2,746,529	1.44 %	△8,870	△0.32 %
060 문화및관광	12,667,599	6.16 %	11,782,559	6.17 %	885,040	7.51 %
070 환경보호	8,089,287	3.94 %	8,298,731	4.35 %	△209,444	△2.52 %
080 사회복지	77,607,992	37.75 %	72,963,220	38.22 %	4,644,772	6.37 %
090 보건	4,633,883	2.25 %	4,621,619	2.42 %	12,264	0.27 %
100 농림허양수산	16,005,276	7.79 %	15,840,093	8.30 %	165,183	1.04 %
110 산업·중소기업	1,397,767	0.68 %	875,389	0.46 %	522,378	59.67 %
120 수송및교통	12,055,211	5.86 %	9,785,698	5.13 %	2,269,513	23.19 %
140 국토및지역개발	11,513,026	5.60 %	10,849,935	5.68 %	663,091	6.11 %
160 예비비	9,420,326	4.58 %	3,034,692	1.59 %	6,385,634	210.42 %
900 기타	35,370,067	17.21 %	35,712,726	18.71 %	△342,659	△0.96 %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97호

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제15조,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I. 201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- 가.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- 나.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- 다. 경과년수별 잔가율
- 라. 가감산특례
- 마. 증·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바.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
- 사.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
2. 세부결정사항 : “201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”와 같음.

※ “201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”는 북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.

Ⅱ. 201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시설물, 부수시설물, 임목, 어업권, 광업권, 회원권, 지하자원 (용어)정의 등

나. 어업권 기준가격(북구)

(단위:천원)

어업종류	시설명	단위	기준가격
복합양식어업	우렁쉥이,전복, 해조류	1ha	6,375
정치망어업	-	1ha	5,500
해조류양식어업	수하식	1ha	3,351

2. 세부결정사항 : “201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”와 같음.

※ “201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”는 북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